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·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연직 위원 : 교육문화복지국장, 기획경제국장
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하는 자
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

며,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4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부 칙

제6조(위원회 통합운영)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0조(수당 등 지급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.